

표지 면지

이규민 의원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CONTENTS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환영사

이규민 국회의원 1

축사

국회의원

김상희, 강민정, 강훈식, 고영인,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승원, 김용민,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장경태,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기원, 홍익표, 황운하

시민사회단체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태훈(참여연대), 장기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제문

1. K-POP, 증오 범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63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생명정치재단 이사장)
2. 정조시대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71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 전공)
3. 국가보안법의 사회심리적 악영향 79
김태형 소장(심리연구소 '함께')
4.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 제7조를 중심으로 87
이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민

반갑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국회의원 이규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흔쾌히 공동주최를 결정해주신 73명 국회의원님들께 각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작은 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종전의 반공법이 흡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태생적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했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정권과 법 집행자의 성향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오랫동안 7조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UN은 199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지난 74년은 통제와 검열을 일반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북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무슨 낙으로 사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알고자 하는 욕구조차 거세돼 왔습니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발언을 할 때조차 심리적 검열이 작동합니다. 남한에서 유라시아로 나가고자 할 때 육로로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오랜 세월 배나 비행기로만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

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면이 고립된 국가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필연적 현실입니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에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반도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어쩌면 인류공영을 위한 우리의 흥익인간의 이념이 전지구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 남북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통일이라는 사명의 완수가 불가능합니다. 통일의 당사자가 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찬양고무죄는 없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저희 의원실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찬성이 45.3%, 반대가 39.5%였습니다. 다수의 국민께서 7조 폐지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과 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 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폐지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 말 하면 너 잡혀간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었던 말입니다. 또 어떨 땐 우리 마음 속에서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의식마저 규정할 만큼의 강력한 각인 효과를 가진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2012년,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머리와 혀까지 정부의 소유물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국제인권규약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적어도 제7조는 폐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조롱’하는 트윗 때문에 피의자가 되고, 故신해철, 정대세,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성과,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머리와 혀까지 정부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저서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 실패에 대해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비록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2018년 헌법 재판소는 5:4로 제7조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입법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야당 내에서도 제7조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도 완성해냈습니다. 여당과 소속 의원님들이 역량을 발휘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3년,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전부개정안을 만든 지 40년, 국보법의 실질적 내용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규민 의원님의 주도로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보법 제7조 폐지를 위한 입법 전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공동주최를 해주시는 선·후배·동료 국회의원님들과 발제자·토론자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등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과 사법부가 마음대로 사람의 표현과 의지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낡은 칼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는 우리 시대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논쟁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는 북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막으면서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허용하는 증오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습 자료를 선택할 때마다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하고 있으며 민족의 화해와 이해를 위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7조는 비교육적인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의 잔재이며 독재정권의 국민 억압 도구였기에 민주사회와 평화통

일을 지향하는 시대와는 공존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 특히 7조는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 하신 지 17년이 흘렀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야만적인 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를 기원합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은 마음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태형 소장님, 우희종 대표님, 이주희 변호사님, 김준혁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오랜 시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남용되었습니다. 1971년 서울대생내란 음모사건, 1981년 부림사건 등 무고하게 희생당한 시민들의 아픔은 우리 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깊게 박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영화 ‘강철비’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을 미화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서 찾아볼 법한 사건들이 2021년 현재에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법을 오랜 시간 방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포기’라는 동의어로 통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잘못된 프레임을 벗겨내고, 국가보안법 7조의 실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더불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는 물론 공동주최로 토론회에 힘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중 특히, 제7조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3~2003년 10년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중 90.6%는 제7조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시민권의 실태를 점검하는 UN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나의 친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흘려야만 했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학생 고영인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눈물의 역사를 끝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안녕하세요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현빈, 손예진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을 미화했다는 것입니다. 판타지에 가까운 설정에도,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침대’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한 신화 속 괴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과 적대가 만들어낸 특수 상황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를 질곡하고 있습니다. 낡은 유산과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건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일흔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실무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단체장님들, 동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한 목적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들어졌고, 이후 독재정권 등에서 정권 유지와 국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어왔습니다.

특히 찬양·고무 등에 관한 내용의 7조는 추상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확대 적용되어왔고,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로 인해 국가보안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경우 형법상 ‘내란·외환의 선전선동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여 굳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정권의 칼로 악용될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라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주최를 위해 고생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고생해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정의는 법 해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스스로를 자기 검열에 빠트리며 오랜 시간 사회 통합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뿌리 내리게 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진영 논리에 갇혀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청산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막을 함께 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에 모순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위험성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칼이 되어 무고한 국민에게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일생을 비참하게 만든 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사랑의 불시착(드라마)’과 ‘강철비2(영화)’가 단지 북한을 미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한 것이 불과 작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과거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토론회 주최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을 발의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법이 만들어진 후, 70년이 넘도록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강력한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의 모태로 제정된 반인권적인 법으로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형벌과잉을 비롯한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 구속자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해입지 않은 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재도 국가보안법 악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국가보안법은 국내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에서 수차례의 개정·폐지를 권고했고,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독재정권의 억압도구로 사용되며 인권침해와 반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더 이상 남용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주최해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해 함께 공동주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숙제였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며, 형법이 생기면서 법체계상으로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7조는 범죄구성 요건 자체가 모호하고, 절차상 피의자 권리가 제한된다는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래된 표현이 그러하듯 이미 이 법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낙인찍어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통제의 영향으로 우리는 오히려 북한을 잘 모르고, 낯설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색안경을 벗고 오늘날의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발판으로, 우리 국회가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공동 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입니다.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도 환영 인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정권에 따른 각기 다른 법 해석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자의적인 법 적용 탓에 헌법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반대 의견 등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넘어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받고, 또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김홍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홍걸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회 주최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와 연장 수단으로 수없이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 1항에서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은 편향·주관적이며,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반민주주의 세력의 사건 조작으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사범의 누명을 쓰고 많은 세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구시대의 악법을 두고만 봐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보법 7조 폐지에 대한 단순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결단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법의 취지와 시대적 가치를 담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방송예술인 단체연합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후 7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일제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정권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의 경우 법률상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규민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정신은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잔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잔재를 계승하는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제가 준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본문입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74년간 시민의 삶을 옥죄어온 악법을 없애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의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입법노동자로서 아직껏 이 악법이 건재하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최근 단 열흘 만에 국보법 폐지 국회 입법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가 더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촛불혁명의 뜻을 이어받은 21대 국회는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국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대전 대덕구 출신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이 그 뿌리입니다. 1948년 제정되어 72년이 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투옥되어 고문받으며 간첩으로 조작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찬양·고무 등의 제7조는 「국가보안법」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십중팔구는 제7조 위반자였습니다. 제7조는 처벌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였고, 반대자나 소수자 억압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었습니다. 찬양과 고무와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내용의 조항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넷 시대에 더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사정과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 이제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론화와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 확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독재 정권의 정치적 탄압 수단, 자의적인 법 해석, 표현의 자유 제약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제정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추상적인 법 조항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상과 양심, 예술과 학문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UN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관련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상식적인 수준의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 함께 공동 주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의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73년째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 보안법’은 ‘트위터 보안법’이 되어 한 개인이 리트윗한 게시물로 구속수사를 받았으며, 한 케이블 방송사의 역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군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넓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은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특히 예술 표현과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 등에 있어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에 따른 법 적용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7조는 더욱이 폐지의 필요성이 큼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낼 때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항)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2년 헌법재판소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헌재 1992. 2. 25. 89헌가104)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것으로, 태생적으로 반인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 정권에서 추상적인 범죄구성 요건과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학문, 예술과 관련된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하고 형벌 과잉을 초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조항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검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입법으로 제시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보안법 7조를 박물관으로 보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인권수호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참여연대·한국YMCA을 비롯한 관련 협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이고, 군사정권은 이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부활시켜 국민 기본권 탄압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부림 사건 등이 국가보안법을 허위 조작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 ‘정권 보안법’으로 조롱받는 국가보안법 7조는 가장 앞장서서 국민 생활과 일상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술적 표현과 양심에 따른 발언, 학문의 자유 모두 찬양·고무죄를 담은 국가보안법 7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2012년에는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조롱의 의미로 트위터한 시민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강철비’ 등도 북한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고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국민 감정에 얼마나 괴리 되어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엠네스티 등 인권 단체도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0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숙된 민주주의에는 성숙한 법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주사회의 가치를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을 억압했던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고, 국민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련 협단체,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미중간 정치적 갈등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조차 쉽지 않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가보안법은 힘 있는 자들의 자의적 해석과 권력을 위한 칼과 방패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민의 인권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국민의 정부부터 2004년 참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논쟁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분열과 살육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간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로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사상적 논리로 해석하며 국민

을 나누고 갈등을 방관해왔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합법적 칼에 무고한 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휘둘리고 죽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낼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대적 변화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교류와 평화 통일을 꿈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두고 등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에 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차별받고 자유를 잃어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왔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한 오해와 차별을 들어보고 민족의 교류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코로나시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새겨들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정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이 모태가 되는 법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채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큼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줄곧 폐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당시 보수정당과 언론의 강력한 반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법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대체적용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익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국가안전보장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고견이 나뉘시길 기대합니다.

이규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함께했던 의원으로서 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양정숙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양정숙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 방송예술인 단체 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의 모태로서, 제정 이후에는 언론·출판·학문·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왔습니다.

특히 7조의 내용에 명시된 ‘이적행위’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공동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합의서 등 남과 북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오히려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는데 국

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 및 철폐 논의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남북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오늘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신 이규민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우리는 이 봄, 독재세력의 잔재이며 겨울 공화국의 유산과도 같은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70여년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또 짓누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치욕적인 과거이고, 슬픈 오늘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을 단순히 칭찬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슬픈 오늘’을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지속을 위한 수구세력의 선내나는 욕망입니다. 그 선내나는 욕망을 끊어내고 ‘슬픈 오늘’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놓아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분단선을 넘나들며 하나 된 조국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 됨을 희망하기에는 국가보안법, 특히 7조라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철조망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분단선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승공을 외치던 7.80년대 ‘막걸리보안법’을 대표하는 7조는 군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열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살아남은 7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빨갱이’를 검증하는 잣대로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7조는 북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담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안법 7조는 버젓이 살아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우선 보안법 7조 폐지를 시작으로 분단사회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분단시대가 가져온 비인간적 사회를 들여다보고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가 다시 봄을 맞이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차별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외친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처럼, 끝내 이 땅에 맴도는 차가운 바람이 사그라들고 평화를 향한 희망의 온기로 서로를 마주하는 날을 그려봅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준비하신 이규민 의원님과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남과북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UN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가는 힘찬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군사정권의 정치적 악용,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침해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제7조(찬양, 고무죄 등) 조항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사소한 불만마저 정권 비판으로 단죄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더 나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늘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위한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정권의 이익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일상적 민주주의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법이 이제 더 이상 폭력적 국가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표현과 민간활동조차 법의 울가미에 가두어버리는 악법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정신적 교감과 동질적 민족의식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임에도 이에 대한 모든 표현은 ‘주적’에 대한 ‘찬양’과 ‘고무’로 치부되어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기하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일상적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국가권력의 ‘감시와 처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권을 위해 악용되어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규정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을 통한 반정부 인사 탄압 등 정권 안보의 도구로 활용된 악법 조항입니다.

그동안 4.27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평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법조문이 개정되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벌써 7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혼란한 정세를 수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어 태생부터 잘못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수사받고, 처벌받으며 고통받아왔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에서 폐해를 지적하고 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촛불혁명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자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낡은 과제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였던 김수영 시인은 4·19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인정하자 실망하여 ‘김일성 만세’라는 시에서 이를 한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가져온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유래한 식민잔재로서 군사·독재권력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가로막는 악법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1980년 반공법을 폐지하며 그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도 추상적이어서 단순히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소개한 책을 소지하거나 군사·독재권력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무소불위의 무기가 되어 국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온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 속에서 오늘의 값진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등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더욱 견고한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낡은 시대의 폐습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1999년부터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지 5년만에야 국가인권위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며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70여 년 넘게 우리사회의 통제도구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국가폭력의 시대를 딛고, 국민주권, 인권존중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촛불 국민들이 만든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더 이상 국민을 옥죄는 악습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열린 미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준비로 애쓰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해 토론회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공동주최하신 다른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에서 당의 검열을 거쳐서 나온 모든 자료를 ‘찬양’하는 자료로 여겨 엄격한 관리하에서만 특수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서 북한의 사진과 영상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에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동서독 방송의 교류가 독일통일과 통합에서 중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북한 자료를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연구하며 알아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답답한 쳇바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법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악법’의 차원을 넘어서, 법의 형식만 취한 폭력이었습니다. 독재정부는 이러한 식민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위헌재판이 진행 중인 국보법 7조는, 형사적 처벌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현행 국보법 7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단순한 자료검색과 연구까지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과 처벌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 과잉처벌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폭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7조,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장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영위해 온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오랜 시간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UN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보법 7조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연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5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10월 국보법 7조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대의 변화,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 인식의 변화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국보법 7조를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권리」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해 늘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열심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정된 지 이미 70여년이 흐른 국가보안법은 그간 모호한 규정으로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남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 대한민국이 괄목한 성장을 이룬 지금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전히 남아 뼈아픈 과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성숙한 시민의식과 선진화된 민주주의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칼은 접어두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규민의원님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저 역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의 상황에서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이 무력 진압된 후 ‘불순분자 숙청’을 명분으로 제정된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헌국회에 출석한 법무부장관마저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니다”고 했던 이 법은 70년 넘는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공법을 그대로 가져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제7조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그 권위주의 독재의 흔적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이 국가폭력이었음이 인정되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부끄러운 과거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제7조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이들의 노고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인재근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공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공의 이름 아래 억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그늘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냉전 질서는 해체되었고 공산주의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면서,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빌미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린 조항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떠한 주장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자신감과 능력의 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 권력이 남용된 과거를 성찰하고,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단체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해 12월 만들어졌습니다. 73년간 온 나라에 반공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추상적인 내용은 국민 통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사상과 상상의 자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유지하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할 경우 국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사항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킬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사상과 양심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독재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제국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후신으로 이름만 바뀌어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UN인권위원회, UN 시민적 정치 권리규약 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당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떨게 만드는 반통일적·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이후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데한 바람직한 관계 정립 그리고 남북 편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치유를 위한 법률안 정비하는 올바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태형 소장님, 우희종 대표님, 이주희 변호사님과 김준혁 교수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공동주최로 함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소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회고록 판매 중지는 면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이 언제든지 사상, 표현 그리고 학문의 권리와 자유를 손쉽게 억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취지를 계승 받은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아닌 ‘독재정권’ 안보법으로 우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로 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유통기한이 벌써 지난 케케묵은 병폐일 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한 지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니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경청하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뜻깊은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이규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UN의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가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 고무죄)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자유를 억압해왔으며,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과 자의적인 법 적용에 따라 국민의 예술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제 7조가 개정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런 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기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이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일으켰고,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낙인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보안법의 그늘 속에 우리 사회가 어떤 질곡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기본권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와 제도 정비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이규민 의원님을 비롯한 75명의 의원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합,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UN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의 수는 2020년에도 1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강철비’가 포함 되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작품인 것인지 아니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데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품격있는 발전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유지하기로 하며 민심을 달랬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이 법은 유지됐고, 군사독재 하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 이후 현재까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와 이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 법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를 말하고 접하면 국가안보 의식이 흐려질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이 법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7조 찬양·고무죄 폐지부터 시작해 전면적인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재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편의를 누렸던 삶의 방식이 실을 오늘날의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를 야기해왔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앞날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구상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민적 상상력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 대한 구상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가 일부 사회주의 요소를 차용한 것처럼,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해야할 요소들에 대한 구상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그 중 7조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와 그러한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적 상상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이나 사회 제 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근대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정당성 없는 억압적 조치나 행위로서 현행법에 의한 공권력 행사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합법을 가장하여 교묘하고 일상적으로 억압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 그 폭력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그 간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억압적 법제가 단순히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서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인신을 구속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적나라하고 물리적인 국가폭력 못지않은 피해를 발생시켜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 악법의 존치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19.3.1 만국을 가득 채웠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4.19와 6월 항쟁을 이어 촛불 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해방정국에 꽃피웠던 다양한 사상적 조우를 맞이해야 합니다.

독립국가로서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의 열망은 해방정국 반민특위 해체와 국보법 제정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망을 다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국YMCA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공고하게 지켜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처벌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침해해 왔습니다.

북한을 알려고 하는 시도, 긍정하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누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의 의도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일평생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적하는 과정을 동반하며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모든 수사과정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화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들과 민간 교류를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알려고 시도하는 것, 긍정하는 것 등 북한에 관한 모든 생각과 행위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 법률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정 직후부터 사회 각계를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되어 온 요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만 9일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

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통일단체, 연구소, 출판사 등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었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20세기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사문화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7개월이 넘게 계류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법률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일조하는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축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님과 공동으로 참여하신 많은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형법학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전체가 아니라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만 폐지대상인 점이 아쉽지만, 공론화의 장이 새롭게 열리고 전체 폐지를 위한 전략적 발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상징형법이자 정치 형법입니다. 잠자고 있다가도 불손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옥죄 필요가 있을 때 깨어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 있기도 하고 사문화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찬양·고무·동조죄로 고발하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이 최근 줄었지만 여전히 통계에 잡히는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는 법입니다.

국가보호를 위한 처벌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호와 안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정권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된 법입니다. 군부독재 정권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만 있어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을 투입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이나 타인의 이적행위에

수감하거나 호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도 7조의 동조죄로 몰아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걸치고 있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형법으로 족합니다. 휴전 상태지만 대치 상황이며 아직도 긴장 상태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법입니다. 남북의 교류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7조가 폐지되고,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장기용 사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지난 수 십 년간 추상적인 범죄구성 요건과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이념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오염된 시대를 넘어 시민이 주인 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를 폐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의 생각과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고 처벌했던 야만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존치의 근거로 삼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필수적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은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근거가 됐던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삭제하고 대신 민족의 공동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7조의 폐지를 시작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

론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다시 한 번 어렵지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디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발제문1

K-POP, 증오 범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생명정치재단 이사장)

발제문1: K-POP, 증오 범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생명정치재단 이사장)

일제 점령이 종식되면서 맞이한 해방의 기쁨은 주변 강대국 대립과 이념 갈등이라는 냉전 체제 속에 민족이 서로 갈려 전쟁을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한반도는 길고 긴 분단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평화와 소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립니다. 참혹한 전쟁을 끝내며 맞이한 정전 상태는 결국 반세기를 훌쩍 넘어 70년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고통은 결코 과거 일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의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상황은 민족 분열과 갈등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측 사회는 혹독한 군사독재 시절과 함께 5.18 항쟁의 상처를 넘어야 했고, 사회 민주화에는 유명, 무명의 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픈 경험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유래 없는 무혈 촛불 혁명을 이뤄내는 국민의 저력으로 꽃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극의 한반도 근대사는 21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에 속한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해 너무도 달라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일본마저 추월했습니다. 영국에서 곧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초청국이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되는 금액도 천문학적이고, 3D 직종은 동남아 노동자가 없으면 유지되기 힘들 정도의 사회입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 체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남북을 비교한다 해도 70년 분단상황 속에 각자의 길을 걸어온 결과, 남측은 북에 비해 국가 경제력 규모 50배가 넘고, 2020년도 기준으로 세계 10위이며, 1인당 GDP는

이탈리아마저 추월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남은 북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 가정을 점령한 것도 이미 오래 전 일이고, 이제는 K-POP이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K-POP의 대표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K-POP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4관왕을 석권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당당하며, 동시에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그들의 높은 인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불편한 것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무혈 촛불 혁명을 이룬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상상조차 해서는 안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명처럼 소리 없이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이후 개인 상상임을 전제로 국가보안법(국보법) 철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조중동이라는 전형적인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심지어 진보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언급해서는 안될 것을 언급했다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의 힘을 믿는 저로서는 그런 반응이란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21세기 한국 사회를 퇴행시키는 낡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상징인 자유로운 표현과 발언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인간 문명 발달의 동력인 상상 그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1세기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사회 금기가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보다 냉철하게 성찰하고 또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무혈혁명까지 이뤄낸 우리 사회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해 상상조차 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타부를 사회 집단 무의식 속에 지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우리 사회를, 자기 검열하며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여전히 사회 밑바닥에서 숨 쉬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옥죄이며 입을 껴매고 있는가?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을 지닌 인간임을 말살시키는 저 어둠의 정체란 무엇일까? 정권마저 촛불 하나로 바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이토록 영향을 발휘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괴물의 이름은 국보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법은 군사독재 시절에 인간 말살 내지 인간도축법으로 활용되었고, 이 악법의 뿌

리는 일제가 독립군을 처벌하던 치안유지법에 근거합니다. 일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답았습니다.

실질적인 탄생 배경으로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빌미로 이승만 정부가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당시 남한의 좌익 공산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제헌의회 법률 10호로 제정하여 당일 시행한 법이니 70년을 훌쩍 넘은 낡은 적폐입니다.

길고 긴 국보법의 과거 폭력은 이미 인터넷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에 되풀이하는 것은 생략합니다만, 한반도 분단과 대립을 넘어 민족 화해와 통일의 염원을 지닌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조차 정권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소위 용공 빨갱이란 표식을 달아 처벌 시켜 온 악법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만 살펴봐도 2003년 독일의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이 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았고, 2008년도 오세철 연세대 교수,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교사, 2010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 2012년 사진작가 박정근, 국민대생 권용석, 2013년 국회의원 이석기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탈북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 외에도 최근에는 평화 교육을 하던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발제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부터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이명박 정부 때의 불법 민간인 사찰 기록을 보니,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한명숙 전 총리, 박원순 전 시장 등과 함께 일개 교수에 불과한 저 역시 '종북좌파연계 불순활동 혐의자'라는 이름으로 원세훈 특명팀에 의해 2011년까지도 관리, 사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평범한 이들조차 전형적인 국보법 위반자로 포장하여 강력히 처벌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국보법은 거창한 사상범만이 대상이 아니라 현행법으로서 언제 어느 때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평범한 이들조차 이적행위를 하는 용공 분자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말살하며 윗아랫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역사적 기록에 불과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씨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습니다. 그 옛날 김일성 이야기가 뭘 그리 위험하다고 두려워 하는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이 무색 해집니다. 이렇게 국보

법은 결코 사문화된 법이 아니며, 더욱이 21세기 다양해진 우리 사회에는 어울리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으로 절실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UN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월 문재인-김정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5월 4차 정상회담과 평양선언, 9월의 9·19 평양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상생의 민족 번영의 시대에 더 이상 국보법은 필요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 갈등을 조장하던 시절로부터 남북 평화로의 중심축이 이동되고,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녹색 위기 개선, 한반도 생태계에 근간한 공동 방역, 다양성의 인정이 곧 공정이라는 성평등과 비혼모나 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외국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등을 고민합니다. 양극화 개선을 위해 학력 세습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 극복을 위한 대학 제도 개혁 등이 논의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민족 분단과 대립 고착화에 기여해 온 국보법의 철폐는 촛불 무혈혁명의 가치 구현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적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세계와 함께 가는 ‘개방성’에 근간했기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남측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세계를 이끄는 대국으로의 도약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서로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할 남북을 소통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국보법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 조장법’임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촉구에 발맞추어 70년 적폐 세력의 근간이자 무기로도 활용되는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70년 대립을 끝내는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남북이 서로를 알고 소통하며 70여년의 간극을 함께 풀어가도록, 남북 양측의 방송과 언론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문화계를 이끌고 있는 남한이 지금도 북한 방송 시청

을 금지하고, 북에 대한 긍정적 발언만으로 징역형을 내리는 상황은 매우 기형적입니다.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70년 전 현실을 21세기에까지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꿈과 상상력을 지니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후속세대에게 이런 질곡의 법안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국보법 철폐는 시대적 요구이며, 그 핵심에 있는 7조 철폐가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촛불 혁명에서 꽃핀 집권 여당에서 이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촛불 정신의 구현을 위임받은 21대 국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직무 태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일 적폐 세력의 대표적 살상 무기로 작동하면서 그 자체로 적폐가 된 국보법 7조 일부 위헌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철폐 행동에 있어서 우선 발의된 국보법 7조 폐지 법안이라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고 자유의지와 상상을 차단하며,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거의 유물인 국보법을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존치 시켜서는 안됩니다. 21대 국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끝으로 시 한 편 남깁니다.

김일성 만세 / 김수영 1960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는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만세'

韓國의 言論自由의 出發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발제문2

정조시대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 전공)

발제문2: 정조시대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 전공)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의 갈등이다.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변종 기독교 문화는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헛된 소리를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은 정상적인 개혁 논의도 무조건 빨갱이의 허튼짓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빠진 이들이 사찰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전각을 불 지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불교 신앙을 가진 이들도 기독교 문화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자신과 사상이 다르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한국사회의 부조리는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현재의 우리와 달리 200여 년 전 정조는 유교 중심의 사회를 극복하고 서학이라 불린 천주학, 불교, 도교, 양명학까지 모두 수용했다. 조선의 건국이념이 ‘숭유억불(崇儒抑佛)’이었는데 불교와 서학을 포용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정조에 게서 배울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정조는 동궁 시절부터 주자학과 우암 송시열의 주자존송주의 등 노론의 학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노장(老莊)사상, 양명학, 불교 등을 인정하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대 주자 중심주의 사상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숙종대 대학자인 윤희가 주자 도통주의(道通主義)를 비판하고 공자의 사상을 조선 선비의 시각으로 해석하겠다고 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송시열 등 노론의 사상가들은 주자 이외에 어떠한 인물의 공자에 대한 해석도 인정하지 않았고, 노장 사상이나 불교학, 더욱이 서학에 대해서는 결단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의 사상계는 주자만이 옳은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정조가 양명학, 노장사상 등에 대한 포용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실 정조는 공자의 계승자를 자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정조는 자신이 세운 신

도시 수원에 공자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궐리사를 건립했다. 당시 노론 신하들이 지역 궐리사는 만들고, 특히 충청도 이성에 궐리사를 세움으로써 공자의 후예임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사대부를 포함하여 민간에서는 궐리사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부분을 철거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 이는 유학의 실질적인 계승자가 조선의 국왕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공주 본류의 유학을 중시했던 정조는 두려움 없이 양명학과 노장사상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인정을 했다.

정조는 특히 장자(莊子)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소요유편(逍遙遊篇)을 높이 평가하며, 장자의 문장이야말로 수많은 학자들의(諸子)의 문장 중에서 제일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왕양명(王陽明)에 대하여도 “왕양명(王陽明)의 학문에 대해 사람들이 혹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의 기상과 문장과 공로는 마땅히 명(明) 나라 제일의 인물로 꼽아야 한다.”라고 평가하며 조선의 사대부들이 왕양명의 문장을 읽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정조는 경산(瓊山)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와 《왕양명집(王陽明集)》은 항상 책상에 놓아두고 아무리 정무(政務)가 바빠도 반드시 한 해에 한 번은 통독을 했다. 이는 구준과 왕양명을 아침저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사대부들이 이런 말을 꺼냈다면 사문난적으로 몰려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자성리학만이 절대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조는 정치적으로도 파격적인 언어를 내보였다. 바로 왕안석에 대한 인정이다. 왕안석에 대해 정조는 1791년(정조 15)년 4월 30일 어전회의에서 이렇게 옹호해주었다.

“왕안석의 고집이 너무 지나쳤지만, 그 재주야 어찌 세상에 쓸 만한 것이 없겠는가, 신종(神宗)이 왕안석을 등용한 것을 보면 그 역시 큰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이었음에 틀림없다”

조선사회에서 왕안석(王安石)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송나라의 대표적 개혁론자인 왕안석은 신종의 신임을 얻어 정치·재정·사회·군사 등 각 방면에 신법(新法)을 도입,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 추진자들의 경험부족과 타락, 그리고 사마광(司馬光)과 같은 정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왕안석의 시행착오는 조선시대 정치에 큰 영향을 주어 잘못된 정치의 표본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왕안석의 실패로 인해 역사 속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경장(개혁)을 하고 싶어도 감히 마음먹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개혁정치를 위해 금기의 벽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의 장점을 취하여 세

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조의 이러한 학문적 개방성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조의 학문이 주자학으로만 경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방성이 불교를 이단으로 판단하던 정조에게 새로운 불교인식을 갖게 해준 밑바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조는 “유가(儒家), 불가(佛家), 도가(道家)를 세상에서 삼교(三教)라고 칭한다. 유자(儒者)는 불가나 도가를 허여하지 않지만, 그 조예(造詣)의 깊은 곳을 논한다면 모두가 최고의 경지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조는 “노자와 석가모니를 이단(異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류(末流)의 폐단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시원(始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만법이 하나로 귀결된다[萬法歸一]’는 것은 불교나 유가(儒家)가 애당초 다르지 않았는데 불씨가 ‘일귀하처(一歸何處)’라는 네 글자를 덧붙여 놓은 따위가 이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유교와 불교, 도교에 대한 포용을 통해 정조는 불경의 하나인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간행했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은중경》의 간행은 세조대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일이 있지만 당시 세조는 스스로 ‘호불의왕’이라 칭할 만큼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로서 당대에 학자들을 지도하고 있던 정조가 불경을 간행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교를 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부모은중경》의 간행이 자신이 불교에 심취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후에 《부모은중경》의 간행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음을 나타내지만 처음 간행 시에는 신료들에게 불경을 숭상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현실은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는 스스로 안변의 석왕사에 비문을 씌으로써 불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안변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의 꿈을 무학대사가 풀어준 곳이다. 무학대사는 이성계가 꾸는 꿈이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었고, 이때부터 이성계는 창업군주로서의 꿈과 의지를 실천했었다. 그러니 석왕사는 단순한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조선 왕실과 매우 밀접한 곳이었다.

정조는 석왕사 비문을 이렇게 썼다.

“불교는 삼교(三教) 중에 가장 늦게 나왔지만 그 영험함은 가장 두드러진다. 유자(儒者)는 이를 믿지 않지만 또한 왕왕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대체로 사람에게는 서원(誓願)이 있으니 부처에게는 자비(慈悲)가 있어 지성으로

빌면 무량한 축력(祝力)을 받을 수 있다. (중략) 목숨을 구하는 자는 목숨을 얻고 자식을 구하는 자는 자식을 얻고, 삼매를 구하는 자는 삼매를 얻고 마니를 바라는 자는 마니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처럼 정조는 불교가 갖는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부처의 은덕이 조선의 건국도 도와주고 자신이 아들을 낳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더해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찰인 용주사를 만들고 용주사의 대웅보전에 안치될 석가모니불상에 대한 기복계(祈福偈)도 직접 작성했다.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부처를 찬양하는 글을 쓴 이는 정조밖에 없다. 숭불론자인 세종이나 세조도 쓰지 않은 것을 대유학자인 정조가 쓴 것이다. 이는 그만큼 통이 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것은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유가에서 ‘인간과 사물은 각기 오성(五性)을 갖추고 있다.’고 한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다만 불교는 영각(靈覺)을 성(性)으로 삼고, 우리 유가에서는 실리(實理)를 성으로 삼는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정조는 여기에 더해 무군지교(無君之教)인 서학마저 포용했다. 서학은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자 제사를 금지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사악한 학문 즉 ‘사학(邪學)’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서학을 인정하다니 이는 정말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정조대에 들어와 서학이 신앙의 문제로 처음 제기된 것은 이른바 명례방 사건이라 불리는 추조적발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추조(秋曹)’라고 불리는 형조에서 이윤과 홍복영, 문인방 등이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역모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명례방에 거주하는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기호남인 계열의 이승훈 등이 천주교 미사를 드리다가 우연히 적발되었다.

당시 장령 유하원은 서양의 책들이 관상감의 역관들을 통해 들어오면서 전국에 퍼져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했다. 더불어 이른바 도(道)라는 것은 다만 하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임금이나 부모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써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키니, 그 해독은 홍수나 맹수보다도 심하다며 사교(邪教)를 금지하고 엄벌할 것을 청원했다 유하원의 이와 같은 상소는 서학을 무군지교(無君之教)로 규정하면서 정조에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를 없애 국왕의 권위를 높이자는 내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조의 친위세력인 기호남인을 제거하자는 의도가 깊이 배어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승훈이 개입된 추조적발사건은 서학을 사교로 규정지은 최초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조는 유하원의

상소에 대하여 서학을 신앙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차단했지만 당시 명례방에 있던 서학 신도들에 대해서는 잡범으로 규정하고 모두 풀어주었다.

1786년 정조는 박제가가 올린 서양선교사 수용론을 배척하지 않았다. 정조는 이 해 전 관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용서 할테니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조의 의중을 이해한 박제가는 청나라가 서양 선교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하여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가 발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몇 차례 청나라를 다녀온 그로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서양 학문을 무조건 배척하는 사대부들의 졸렬함을 비웃었을 것이다. 박제가는 정조에게 서양 종교인 서학은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와 같은 종교일 뿐이고 이 종교가 국가 운영을 제어할 수도 없고, 유교 사회의 근본 원리를 저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양 선교사들을 적극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로 조선을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정조는 박제가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만약 정조가 열린 생각이 없었다면 박제가의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1788년(정조 12) 8월 당시 정언이던 이경명이 상소를 하여 ‘요망한 학설로 종당의 화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를’ 서학을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하자 정조는 다음 날 어전회의를 열어 서학의 유포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에 정조는 서학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나의 생각에는 오도(吾道)와 정학(正學)을 크게 천명한다면 이런 사설(邪說)은 일어났다 가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을 불살라 버린다면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조는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면서 오히려 정학이 바로 서지 않아서라고 공박했다. 더불어 정조는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학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서양의 사학이 여러 도에 두루두루 편재해 있으나 유독 영남과 해서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영남은 퇴계의 유포가 남아있고, 해서는 율곡의 지나친 감화가 남아 있다. 내가 사학에 미혹된 무리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혹 너무 느슨하게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저 미혹된 자는 술 취한 사람과 같으니 술이 깨면 다시 정상인이 된다. 만약 그가 취했다 해서 재빨리 법률을 사용해서 후회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내 어찌 이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정조는 서학이 비록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정학이 바로 서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 강조하고 그들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조가 이처럼 서학에 대한 대응을 온건하게 한 것은 자신의 왕권강화

를 위해 서양 기계[西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남인을 등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이었다. 정조는 수학, 역상과 관련된 서적의 수입 문제를 이가환에게 문의할 정도로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화성축성의 설계를 상중이었던 정약용으로 하여금 맡게 한 것은 그가 일찍부터 서학에 대한 관심을 통해 서양 기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는 중국에서 수입한 서기서를 다산에게 하사함으로써 화성 축성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 정조는 1781년(정조 5)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내각방서록》에 포함된 《기기도설》, 《직방외기》, 《서방요기》 등 서양의 과학과 인문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서적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 중에 《기기도설》을 내려주었다. 정약용은 정조로부터 《기기도설》을 받아 인중(引重)과 기중(起重)의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작성해 바치고 화성건설에 실제 이용했다.

결국 정조의 이와 같은 서학 포용과 서기를 이용하고자 한 뜻은 농업과 상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정국운영 전반과 훗날에 있을 신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 축성을 서양 기계(西器)에 능통한 기호남인과 함께하고자 함이었다.

우리는 정조의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도 자신과 다른 사상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만큼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이롭다워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문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다. 분단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하다못해 대통령을 빨갱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고 있는 세상에서 북한에 대한 찬양과 비판은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장차 분단 국가의 아픔을 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발제문3

국가보안법의 사회심리적 악영향

김태형 소장(심리연구소 '함께')

국가보안법의 사회심리적 악영향

심리학자 김태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다?

- 70여년간 지속되어온 분단 체제와 국가
보안법
- 외적인 처벌, 법적 규제(억제)
-> 사문화가 아닌 습관화, 내면화(억압)

금지된 사상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 정치적 반대자,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 -> 금지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 빨갱이, 종북 -> 마녀사냥 가능
- 중세사회 : 이단, 마녀 / 파쇼사회 : 사회주의자 / 한국 : 빨갱이, 종북세력

국가보안법의 배후심리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공존하지 않겠다

-> 공존 거부, 배타성(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사회심리적 악영향 1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

남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는 한국인들 : 배타성

-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 →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심리 만연
- 건강한 소통과 토론,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

비겁함(무권리, 무저항)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한 한국인들

- '말 많으면 빨갱이' : 권리를 주장하고 저항을 하면 빨갱이로 몰린다 → 무권리, 무저항이 삶의 철학이 됨
- 무저항주의, 패배주의를 교육하는 부모들 :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지 말라 등

반민주적 조직문화

- 배타성 + 무권리 → 갑질 사회, 학대 사회 / 반민주적 조직문화
-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며 반민주적인 조직문화 만연

반민주적 문화는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

- 중국 등의 등장으로 후발자 전략의 효과 상실 → 창의성, 혁신적인 사고 등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
- 반민주적 조직문화 : 배끼기는 가능하지만 창의성, 혁신은 불가능 → 창의성, 혁신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에서만 가능함
- 한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반민주적 문화를 척결해 민주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함 → 한국인의 우수한 창의성, 혁신적 사고가 꽃피날 것임 : 분단 트라우마 극복, 분단 체제 해체는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국가보안법의 사회심리적 악영향 2

후진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

- 민주세력 : 정책 수립에서의 자기검열
과 위축 -> 근본적인 사회개혁 외면
- 반민주세력 : 정책 개발에 무관심 = 색
깔공격으로 생존해온 역사

공정한 정책경쟁 불가능

- 과거 : 색깔공격만 잘 하면 다 해결
됨 / 현재 : 도덕성 공격, 흠집내기
- 국민을 위한 정치 불가능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복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발제문4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 제7조를 중심으로

이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문4: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 제7조를 중심으로

이주희 변호사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최초 제정당시에도 치안유지법과 거의 유사하고 인권침해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될 정도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정부는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는 입법취지로 다수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취지대로라면 형법 제정과 함께 폐기되었어야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안 정부 초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규정한 ‘필요최소한도의 해석적용, 확대해석 금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제한금지(제1조 제2항)’는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실제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제1조 제1항)²⁾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증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문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위의 법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

1) 법무법인 다산 / 국가보안법위헌소송공동대리인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아 온 악법이기에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를 중심으로 위헌성을 검토합니다.³⁾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⁴⁾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⁵⁾에서 도출되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 등). 사람을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형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어떠한 종류로 얼마만큼의 처벌을 초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면, 이 조항이 형사처벌조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명확성원칙을 전면 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최소한의 명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 5. 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다만 기본권침해성을 판단하는 헌법심사기준(비례원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헌법의 일반원리, 해당 기본권의 보편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함.
4) 이하 2020.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위헌소송대리인단 의견서를 발췌 정리함
5)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 가령, 제1항에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무엇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이 없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그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간부나 지도적 이념에 종사하는 자까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구성원 즉 북한집단주민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활동’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고, ④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일컫는지, 각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매우 모호합니다. 특히 ‘동조’가 만약 찬양과 고무보다는 약한 표현행위라고 했을 때, 해석 여하에 따라 북의 주장과 유사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표현행위가 이에 속하여 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과 조금이라도 유사하거나 북한 구성원에 대한 호의를 표출하는 경우 어떠한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일반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그야말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합니다.

(2) 제5항에서, ①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에서, 기타 표현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그 내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외연이 광범위하게 확장됩니다. 표현물의 범위 또한 영상매체나 사진파일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표현물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광범위합니다.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 손괴죄 등에서 문서, 도화와 특수매체기록(영상, 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규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보안법에서만 이 범위를 구분, 한정하지 않고서, ‘고정성, 계속성, 가시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사람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면 모두 이 조항의 ‘표현물’에 해당하게 합니다. 가별성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고, 수범자로서는 무엇이 ‘기타의 표현물’에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판단자의 자의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②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에서, 소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면 그 순간 취득과 소지가 성립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운반, 반포 또는 판매가 될텐데, 이 죄들이 각각 성립하는 것인지, 불가별적 사전행위/수반행위/사후행위 등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③ 무엇보다 실무에서는 ‘소지’와 ‘취득’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취득죄의 공소시효 회피 목적으로 소지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는 결과범이고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사실상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없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던 표현물의 경우 수사기

관이 취득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모두 소지죄로 의율하여 사실상 공소시효 제도마저 잠탈합니다.

위와 같이 이 조항은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과연 어떤 행위가 제7조의 처벌대상인지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한 영장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그 이틀 후 다른 영장판사는 영장청구를 인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 법관조차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형벌에 관한 책임 원칙은 ‘형벌은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무제한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해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게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살펴보면, 각 행위태양과 위협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5항과 제1항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도 제1항과 제5항은 불법의 정도, 행위의 위협성, 죄질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형량을 규정합니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제7조의 모든 항은 징역형으로만 한정된 채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행위의 양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지취득의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파일형태로만 소지, 취득한 상태에서도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관의 양형재량권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죄질의 경중, 소극성과 적극성, 행위의 결과와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선택하고 있어 형벌개별화의 원칙,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7조 등에서 징역형만 규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철폐협약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⁶⁾

3. 헌법상 다수의 기본권 침해

가. 인간존엄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를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조항”으로 평가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⁷⁾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⁸⁾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법률은 비례상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이 위헌으로 판명됩니다.

또한 사상 또는 정치적 자유는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침해될 수 없는 인간존엄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수의 사상가들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강압이 인간존엄침해임을 역설해왔습니다. 마이호퍼는, 국가만이 사상과 이념, 정치적 의견을 선택할 권리를 독점하고 개인에게는 그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대한 인간존엄 침해임을 지적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 사이의 정치적 관용과 한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관용을 관철하는 것이 자유법치국가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을 국가 활동의 단순한 객체, 즉 국가의 목적을 위한 일방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조치, 국가가 규정한 세계관,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양심을 강제하고 심정에 폭력을 가하는 것도 인간존엄침해라 하였습니다. 미하엘 작스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자유로운 기본권행사의 일환으로, 타고난 특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개인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 바꿀 자유를 가집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여 형성한 사상이나 신념을 국가가 이익 제공 또는 불이익 압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자기결정을 부인함으로써 인간존엄을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특정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담긴 표현물을 타인에게 전파하기 전의 단계인 제작, 취득, 소지조차 처벌하는 것, 특정사상을 포기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거

6) 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13.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 협약 가입 권고 결정문」, 14-15쪽.

7)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8) 헌법재판소 2016. 12. 1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등

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합니다. 개인을 자기결정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사상이나 의견을 가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이고,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사상이나 의견을 버리도록 강제함으로써 개인을 국가적 법익에 대한 객체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가진 사상적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표현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만 형성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할 자유는 서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어떤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인격의 발현으로서 자유로운 사상 표현의 중요성을 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사람을 오직 국가안전보장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국가적 법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합니다. 개인에게 국가가 선택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복종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부인합니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이력이 있거나 국가보안법 처벌전력이 있거나 사회비판적 언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표현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하여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를 억압합니다. 사상적 정치적 의견이나 표현이 공공질서나 사회 안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권력기관이 그 사상과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악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향만으로 처벌합니다. 모두 인간 존엄의 침해입니다.

나. 양심·사상의 자유 침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며, 위 양심에 세계관, 주의, 신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⁹⁾

실현을 허용받지 못한 양심사상은 온전히 형성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공권력에 의해 제한된다면 양심사상은 결국 내심에 머무를 자유로 극도로 위축됩니다. 내심에 간혀서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면 감옥 안의 자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설사 외부 표출시 제한이 일부 가능하다 하더라도 표출의 모든 단계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제7조에서 제5항 ‘제작, 취득, 소지’는 외부로 표출되기 전 단계인 양심사상의 단순한 기록, 입수 및 사적 공간의 간수로서 사상형성과정에 불과하여 침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고, 제1항 ‘동조’는 사상이 표현에 이르는데 필요한 행위주체의 의식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몸짓과 말임에도 이를 처벌대상으로 하여, 아직 유지단계에 있을 뿐인 양심사상조차 처벌합니다. 내면의 사상을 통제하는 사상통제법으로서 양심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합니다.

다.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 전반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표현의 자유란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라고 하였습니다.¹⁰⁾ 또한 표현의 자유가 ‘민주적이고 열린 정치체제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하게 기여’한다면서,¹¹⁾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운영원리와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의 자유는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내용 규제 입법의 위헌성 심사에 적용해온 기준으로, 표현이 발생시키는 폐해는 그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9)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10)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11)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근거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원칙 중 ‘명백성’은 적용하고 있으나 ‘현존성 또는 급박성’은 아직까지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근대 형사법의 기본 개념인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표현의 자유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전제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상적 정치적 표현의 제한에 있어서도 ‘위험의 현존성 또는 급박성’을 그 제한의 요건으로 하루빨리 수용해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그 최소한은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수용입니다. 권력자가 누군가의 사상적 정치적 표현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상황이 아닌데도 단순히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확인했듯이, 위급사태시 즉각적인 공권력 발동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으로서 행동에 이르지도 않은 말 또는 표현물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지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은, ‘문제되는 의견이 전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면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의견조차 자유로이 유통되는 공간이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입니다. 인간의 누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자유토론에 맡겨서는 그 해악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즉 표현에 있어 현존하는 위험만 제한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어떤 표현행위로 위험이 현존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그 행위가 말이어도 처벌하고, 기존 국가질서와 배치되는 내용 특히 사회의 정치적 주류자들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제작 소지 취득’은 외부로 전파가 시작되지 않아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데도 처벌합니다.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도, 결국 그 목적이 ‘이적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이적 목적 여부를 결정짓는 주된 요소가 행위자의 이력이나 전력, 과거의 행위경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 추정에서 벗어날 길 없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찬양 고무 선전 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홈즈 대법관은 ‘모든 사상은 선동이다... 의견 표명과 선동의 유일한 차이점은 화자가 그 결과에 대해 품고 있는 열정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그 표현이 초래할 객관적 위험성 증대 여부에 주목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표현행위를 처벌합니다.

라.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학문 예술의 자유를 누릴 사람들은 특정한 학자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 연구결과발표, 강학, 학문적 집회결사 등 모든 형태의 학문적 행위들을 포괄하며, 학문예술의 자유의 핵심은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한 ‘예술적인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복합적, 다의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언어’인데, 한 작품이 국가안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당 작품에 대한 일의적 해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술의 자유 제한은 예술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의 학문적 성과, 예술적 표현물로 처벌받았던 강정구 교수, 신학철 화백 등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학문연구자, 예술작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자기 검열을 구조화하고 결국 자유로운 연구 및 창작 활동을 억압하여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마.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로서, 그 외 다른 기준이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행위자의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게 하여 간접차별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근대형법의 전제인 행위처벌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폭력적 행위 여부라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상, 이념에 찬성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면서, 이 법이 개인이 가지는 평소의 사상에 따라 차별취급을 할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바. 소결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인간존엄,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 그 형이 실효되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습니다.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기만 하여도 그의 말과 정신은 이미 가두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그 피해가 모두 복원되지도 않습니다. 낙인과 배제가 가져오는 고립의 가혹함과 그로 인한 자아 파괴의 폐해는 국가가 말과 생각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더구나 이 법이 사용된 역사적 맥락을 보면, 결국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목적은 극우집권세력이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4.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평가, 법원의 상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¹²⁾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꾸준히 그 폐지를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 2015년 각 대한민국 정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국가보안법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반함을 확인하였고, (2)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3)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2006년, 2017년 각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되었더라

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2004. 8. 23.

도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체포와 구금 등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7조에 대해 1990. 4. 2. 최초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국회는 1991. 5. 31. 개정으로 한정합헌 취지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5. 4. 30.까지 제7조에 대해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꾸준히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① 조승형 재판관은 ‘지적한 문언 중 과반수가 넘는 문언에 대하여 입법자가 우리 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을 더한 것만으로는 이 법조항의 자의적 적용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¹³⁾ ② 대법원의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의 현실문제를 고민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 중 북한과 반대되는 주장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공안담당기관이 허용하는 의견을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면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¹⁴⁾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꾸준히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 8. 4. 수원지방법원(판사 김도요), 2019. 1. 28.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용찬)에서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현재 이 조항은 여덟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맺음말

위험적인 국가보안법이 70여 년간 살아남아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피해 사례를 대신하여, 고 신해철 가수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13) 조승형 재판관,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의 반대의견

14) 박시환 대법관,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등 반대의견

신해철씨는 2009. 4.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¹⁵⁾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케트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단체는 그를 국가보안법 7조 위반(찬양고무선전)등으로 고발했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¹⁶⁾.

신해철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¹⁷⁾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개인들은 좌빨도 아니고 주체사상에 경도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국제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되었고, 이는 한 개인이 증오와 공포의 무한 재생산에서 벗어나 미래를 재단하기에 충분한 양이므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으로도 협박과 폭력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시대의 자연스런 흐름입니다.”...“내가 홈페이지에 미사일경축발언을 쓴 이유는 ‘증오와 공포의 무한 재생산’이라는 방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끊임없이 휘둘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과 조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수사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폭언도 없었지만, 나이가 마흔살이 넘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내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남에게 검토받아야 하는 시간 자체가 폭력이고 굴욕이었습니다.”

신해철씨가 무려 10여 년 전에 쓴 위 글은 2021년 지금 현재에도 생생한 공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외적 성장은 이전에 비할 바 없으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 실질적 성숙, 그리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은 요원합니다.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민주주의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자유롭게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잘못 표기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16) 머니투데이, 2010. 1. 29. 「검, ‘북 로켓발사 축하글’ 신해철 무혐의처분」

17) 오마이뉴스, 2010. 2. 1. 「신해철 “국보법 무혐의 유감”」